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12-08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1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15누36463 취득세부과처분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

원고, 항소인 [redacted]

피고, 피항소인 [redacted]시장

제1심 판결 [redacted]지방법원 2015. 1. 30. 선고 2014구합32114 판결

변론종결 2015. 9. 2.

판결선고 2015. 9. 23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4. 3. 25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부과처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12-08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.

2. 결 론

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안철상

판사 김경환

판사 정승규